목 차

I. 제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	1
1. 저	1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2. 하	배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도면 및 위치도	2
. 3	위치도	2
• 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붙임1	2
Ⅱ. 제1	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3
1. 5	E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3
가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3
나	h.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3
2. 호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
가	h.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1
나	h.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21
다	h.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29
TT -114	조 리크리시계원제 레리 프리카리 보기프 . HAIO	0.7
Ⅲ. 제⊥	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붙임2	37
1.5	E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37
2. 호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37

※ (참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연혁

- 2005. 12. 30. : 부천 범박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 2015. 11. 30. :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범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고시 제2015-187호)
- 2017. 7. 31. :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범박지구·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고시 제2017-168호)
- 2018. 1. 22. :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범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고시 제2018-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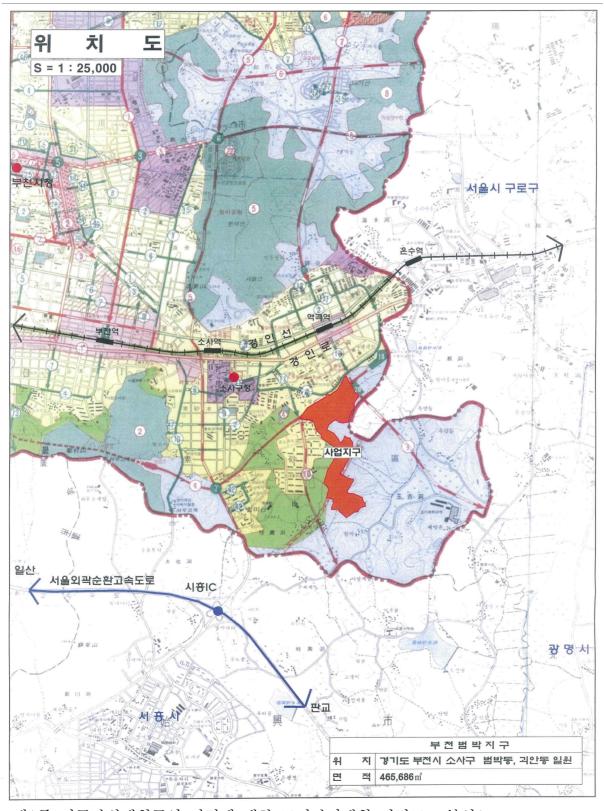
I.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え	면 적(m²)	비고
	-	부천범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천시 기안동 일원	465,686.6	

2.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도면 및 위치도

· 위치도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붙임1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1) 부천범박지구

	구 분	면 적 (m²)	구성비 (%)	비고
	합 계	465,686.6	100.0	
	소 계	249,135.1	53.5	
スコ	제1종 전용주거지역	27,746.1	6.0	
주거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4,327.3	9.5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7,107.6	29.4	
	준 주 거 지 역	39,954.1	8.6	
녹지	소 계	216,551.5	46.5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216,551.5	46.5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50	7,111	121,471.5	16	3,068	51,043.6	16	2,795	58,522.3	18	1,248	11,905.6	
광로	1	324	16,061.8	-	_	-	1	324	16,061.8	-	_	-	
대로	3	879	28,111.1	_	_	_	1	754	26,702.6	2	125	1,408.5	
중로	9	2,768	49,961.7	5	1,932	39,195.3	1	186	2,785.8	3	650	7,980.6	
소로	37	3,140	27,336.9	11	1,136	11,848.3	13	1,531	12,972.1	13	473	2,516.5	
비고		가각전제, 가감속 차선, 버스베이 포함											

^{*} 도로 면적은 지구계내의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 ()는 사업지구내임

주요 경과지 :로 범박동	최초 결정일	비고
로 범박동	20 -11	
	경기도고시 제1983-126호 1983.06.22	계수 대로
로	경기도고시 제1987-275호 1987.10.20	
豆	경기도고시 제1994-198호 1994.07.16	변경
로	부천시고시 제2009-89호 2009.10.26	
-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 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변경
로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3호 2010.4.27	변경
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豆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로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로로	1987.10.20 1987.10.20 198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10.20 197.20 197.10.20 197

		Ť	구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소로	2	747	8	국지도로	28	중로 1-59	근린공원 144호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748	8	국지도로	219	중로 1-59	소로 2-749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749	8	국지도로	306	중로 1-60	중로 1-60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750	8	국지도로	102	소로 2-749	소로 2-749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751	8	국지도로	118	소로 2-749	소로 2-749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825	8	국지도로	61	소로 1-200	경관녹지 256호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소로	2	753	8	국지도로	118	소로 1-200	소로 1-201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754	8	국지도로	61	소로 2-753	소로 2-758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755	8	국지도로	103	소로 1-201	소로 2-757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756	8	국지도로	68	소로 2-755	소로 2-758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757	8	국지도로	65	중로 1-61	소로 2-758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2	758	8	국지도로	265	소로 1-200	소로 2-757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712	6	국지도로	45	중로 1-59	광명시 구역계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713	6	국지도로	60	소로 2-749	동측 지구계 범박동 8-12과	일반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800	6	특수도로	21	대로 2-9	소로 1-272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715	6	특수도로	7	대로 2-9	괴안동 251-1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723	4	특수도로	19	중로 1-61	소로 2-758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717	4	특수도로	18	중로 1-60	소로 2-748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718	4	특수도로	34	소로 2-749	소로 2-750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719	4	특수도로	34	소로 2-750	소로 2-751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720	6	특수도로	30	중로 1-60	소로 1-198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721	6	특수도로	30	중로 3-64	주차장 106호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로	3	801	6	특수도로	24	대로 2-9	소로 1-273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소로	3	802	5	특수도로	118	대로 2-9	소로 1-27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소로	3	803	5	특수도로	33	중로 1-59	소로 1-27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3개소	5,648.9		
_	주차장 106	노외 주차장	범박동 212-6 차	3,017.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_	주차장 152	노외 주차장	괴안동 254-1 차	1,474.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_	주차장 153	노외 주차장	괴안동 246 차	1,157.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나) 공간 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2개소	786.2		
_	광장 33	경관 광장	범박동 208-4 공	203.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_	광장 34	경관 광장	범박동 211-8 공	58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2)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7개소	57,781.60		
	소 계			1개소	730.5		
_	소공원 248	공원	소공원	범박동 210 공	73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03호 2011.06.22	변경
	소 계			3개소	6,969.9		
_	어린이 공원146	공원	어린이 공원	괴안동 251-7 공	1,848.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_	어린이 공원246	공원	어린이 공원	범박동 225-3 공	1,50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_	어린이 공원148	공원	어린이 공원	범박동 232-8 공	3,618.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 계			2개소	39,938.0		
_	근린공원 144	공원	근린 공원	괴안동 263 공 일원	27,695.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_	근린공원 145	공원	근린 공원	범박동 234-2 공	12,24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소 계			1개소	10,143.2		
_	체육공원 247	공원	체육 공원	괴안동 262 공	10,14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3)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27개소	81,915.1		
	소 계			13개소	29,969.3		
	완충녹지91	녹지	완충 녹지	괴안동 245 공	3,267.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92	녹지	완충 녹지	괴안동 244 공	6,74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93	녹지	완충 녹지	괴안동 255 공	1,129.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95	녹지	완충 녹지	괴안동 251-2 공	93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96	녹지	완충 녹지	괴안동 251-4 공	95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97	녹지	완충 녹지	괴안동 251-6 공	95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98	녹지	완충 녹지	괴안동 258-4 공	367.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252	녹지	완충 녹지	괴안동 259-2 공	159.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완충녹지99	녹지	완충 녹지	범박동 205-1 공	1,699.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100	녹지	완충 녹지	범박동 229 공	6,560.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101	녹지	완충 녹지	범박동 232-2공	4,833.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완충녹지102	녹지	완충 녹지	범박동 233 공	1,955.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변경
	완충녹지253	녹지	완충 녹지	괴안동 245-1 공	405.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03호 2011.06.22	
	소 계			14개소	51,945.8		
	경관녹지103	녹지	경관 녹지	괴안동 265-2 공	7,31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경관녹지104	녹지	경관 녹지	괴안동 264-2 공 일원	17,884.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도로(1,102㎡) 공공공지(105㎡) 중복면적포함
	경관녹지105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05 공	3,86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경관녹지254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14 공	5,59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경관녹지255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34-6 공	38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03호 2011.06.22	
	경관녹지256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18 공	56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경관녹지257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19-1 공	159.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경관녹지258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19-5 공	86.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경관녹지107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30-2 공	2,167.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경관녹지259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33-1 공	328.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변경
	경관녹지108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32-9 공	12,64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경관녹지109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34-4 공 일원	397.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경관녹지260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33-2 공	17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03호 2011.06.22	변경
	경관녹지261	녹지	경관 녹지	범박동 230 공	384.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25호 2011.10.28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0개소	3,746.5		
	공공공지80	공공 공지	괴안동 265 도	435.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공공공지81	공공 공지	괴안동 264 도 일원	764.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경관녹지 중복면적 105㎡ 포함
	공공공지27	공공 공지	범박동 204-16 도	160.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공공공지28	공공 공지	범박동 204-15 도	25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공공공지29	공공 공지	범박동 208-10 도	90.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공공공지30	공공 공지	범박동 208-9 도	12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공공공지82	공공 공지	범박동 217-1 도	169.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공공공지83	공공 공지	범박동 229-1 도	8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도로 중복면적 98㎡ 포함
	공공공지84	공공 공지	범박동 232-1 도	198.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9호 2009.12.30	
	공공공지31	공공 공지	범박동 232-7 도	669.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2개소	13,565.0				
	유치원 154	학교	유치원	범박동 232-4 대	995.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중학교 144	학교	중학교	범박동 232-3 학	12,569.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367.0		
	사회복지시설 7	사회 복지	_	괴안동 264-1 대	1,367.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라) 유통 및 공급시설

-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40.9		
	가스공급설비 2	가스 공급	가스 정압장	범박동 230-1 잡	40.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마) 방재시설

-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u>합</u> 계				4개소	7,608.5		
	유수지 4	유수지	저류 시설	괴안동 251-5 유	1,45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유수지 5	유수지	저류 시설	괴안동 265-1 유	1,554.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유수지 6	유수지	저류 시설	범박동 217 유	1,394.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유수지 7	유수지	저류 시설	범박동 234-3 유	3,200.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 2005.12.30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7) 7			획 지		
보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_	40,328.7	_	_	40,328.7	
_	A-1	1,928.3	-1	괴안동 255-1대	277.0	
			-2	괴안동 255-2대	273.1	
			-3	괴안동 255-3대	270.3	
			-4	괴안동 255-4대	270.8	
			-5	괴안동 255-5대	273.0	
			-6	괴안동 255-6대	266.8	
			-7	괴안동 255-7대	297.3	
	A-2	2,659.2	-1	괴안동 256-1대	267.3	
			-2	괴안동 256-2대	272.8	
			-3	괴안동 256-3대	272.5	
			-4	괴안동 256-4대	277.7	
			-5	괴안동 256-5대	266.0	
			-6	괴안동 256-10대	251.8	
			-7	괴안동 256-9대	265.3	
			-8	괴안동 256-8대	266.2	
			-9	괴안동 256-7대	259.8	
			-10	괴안동 256-6대	259.8	
	A-3	2,288.0	-1	괴안동 257-1대	256.4	
			-2	괴안동 257-2대	232.4	
			-3	괴안동 257-3대	233.0	

т н	-J) -J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번호	위치	면적(m²)	비고
			-4	괴안동 257-4대	233.0	
			-5	괴안동 257-5대	245.8	
			-6	괴안동 257-9대	274.4	
			-7	괴안동 257-8대	264.0	
			-8	괴안동 257-7대	263.0	
			-9	괴안동 257-6대	286.0	
	A-4	847.6	-1	괴안동 258-1대	282.6	
			-2	괴안동 258-2대	283.3	
			-3	괴안동 258-3대	281.7	
	A-5	1,401.4	-1	괴안동 260-1대	222.6	
			-2	괴안동 260-2대	233.0	
			-3	괴안동 260-3대	233.0	
			-4	괴안동 260-4대	233.3	
			-5	괴안동 260-5대	235.5	
			-6	괴안동 260-6대	244.0	
	A-6	334.3	-1	괴안동 259-1대	334.3	
	A-7	1,570.7	-1	범박동 202-1대	262.3	
			-2	범박동 202-2대	258.7	
			-3	범박동 202-3대	260.6	
			-4	범박동 202-4대	264.0	
			-5	범박동 202-5대	262.9	
			-6	범박동 202-6대	262.2	

도면	7] 7		획 지			
도 먼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A-8	1,291.6	-1	범박동 204-1대	256.2	
			-2	범박동 204-2대	258.3	
			-3	범박동 204-3대	257.8	
			-4	범박동 204-4대	259.4	
			-5	범박동 204-5대	259.9	
	A-9	2,073.4	-1	범박동 204-7대	261.4	
			-2	범박동 204-8대	258.4	
			-3	범박동 204-9대 범박동	259.2	
			-4	원학동 204-10대 범박동	259.3	
			- 5	204-11대 범박동	259.0	
			<u>-6</u>	204-12대 범박동	259.2	
			-7	204-13대 범박동	258.8	
	A-10	1,527.6	-8 -1	204-14대 범박동	258.1 254.5	
	A 10	1,527.0	-2	206-1대 범박동	253.0	
			-3	206-2대 범박동	252.1	
			-4	206-3대 범박동 206-13대	260.2	
			-5	범박동 206-12대	259.4	
			-6	범박동 206-11대	248.4	
	A-11	1,326.7	-1	범박동 206-5대	195.9	
			-2	범박동 206-6대	194.9	
			-3	범박동 206-7대	197.6	
			-4	범박동 206-10대	246.9	
			-5	범박동 206-9대	245.9	
			-6	범박동 206-8대	245.5	

드립	-1 -7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A-12	1,618.9	-1	범박동 207-1대	202.5	
			-2	범박동 207-2대	200.3	
			-3	범박동 207-3대	200.2	
			-4	범박동 207-4대	199.3	
			-5	범박동 207-19대	220.2	
			-6	범박동 207-18대	199.1	
			-7	범박동 207-17대	199.1	
			-8	범박동 207-16대	198.2	
	A-13	2,000.7	-1	범박동 207-6대	193.7	
			-2	범박동 207-7대	193.2	
			-3	범박동 207-8대	193.1	
			-4	범박동 207-9대	193.1	
			-5	범박동 207-10대	194.4	
			-6	범박동 207-15대	192.7	
			-7	범박동 207-14대	191.9	
			-8	범박동 207-13대	192.0	
			-9	범박동 207-12대	228.9	
			-10	범박동 207-11대	227.7	
	A-14	792.9	-1	범박동 208-1대	264.7	
			-2	범박동 208-2대	264.2	
			-3	범박동 208-3대	264.0	

도면	가구			획 지		
번호	번호	면적(m²)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A-15	1,049.8	-1	범박동 208-5대	264.1	
			-2	범박동 208-6대	262.2	
			-3	범박동 208-7대	262.0	
			-4	범박동 208-8대	261.5	
	A-16	521.5	-1	범박동 214-2대	260.6	
			-2	범박동 214-1대	260.9	
	A-17	530.7	-1	범박동 214-3대	265.8	
			-2	범박동 214-4대	264.9	
	A-18	1,055.7	-1	범박동 215-4대	262.4	
			-2	범박동 215-1대	263.8	
			-3	범박동 215-3대	264.2	
			-4	범박동 215-2대	265.3	
	A-19	1,075.9	-1	범박동 218-1대	282.5	
			-2	범박동 218-2대	266.2	
			-3	범박동 218-3대	264.0	
			-4	범박동 218-4대	263.2	
	A-20	2,192.5	-1	범박동 221-1대	262.2	
			-2	범박동 221-2대	241.0	
			-3	범박동 221-3대	240.9	
			-4	범박동 221-4대	241.8	
			-5	범박동 221-5대	244.1	
			-6	범박동 221-6대 범사도	239.7	
			-7	범박동 221-7대 범사도	242.1	
			-8	범박동 221-8대 범사도	240.4	
			-9	범박동 221-9대	240.3	

т н	7] 7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A-21	1,919.5	-1	범박동 224-1대	244.8	
		-	-2	범박동 224-2대	234.7	
			-3	범박동 224-3대	235.1	
			-4	범박동 224-4대	237.0	
			-5	범박동 224-5대	235.3	
			-6	범박동 224-6대	235.7	
			-7	범박동 224-7대	235.6	
			-8	범박동 224-8대	261.3	
	A-22	1,002.7	-1	범박동 227-1대	259.0	
			-2	범박동 227-2대	246.2	
			-3	범박동 227-3대	246.9	
			-4	범박동 227-4대	250.6	
	A-23	813.0	-1	범박동 219-2대	267.4	
		_	-2	범박동 219-3대	268.4	
			-3	범박동 219-4대	277.2	
	A-24	2,441.6	-1	범박동 222-1대	269.1	
		_	-2	범박동 222-9대	265.4	
		_	-3	범박동 222-8대	264.7	
		_	-4	범박동 222-7대	257.5	
		_	-5	범박동 222-6대	258.5	
			-6	범박동 222-5대	263.3	
			-7	범박동 222-4대	265.5	
			-8	범박동 222-3대	330.6	
			-9	범박동 222-2대	267.0	

도면	7) T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A-25	2,436.5	-1	범박동 223-1대	224.2	
			-2	범박동 223-2대	227.5	
			-3	범박동 223-3대	227.4	
			-4	범박동 223-4대	248.4	
			-5	범박동 223-5대	251.6	
			-6	범박동 223-10대	260.6	
			-7	범박동 223-9대	248.3	
			-8	범박동 223-8대	248.9	
			-9	범박동 223-7대	249.0	
			-10	범박동 223-6대	250.6	
	A-26	904.9	-1	범박동 225-1대	242.2	
			-2	범박동 225-2대	227.5	
			-3	범박동 225-5대	210.2	
			-4	범박동 225-4대	225.0	
	A-27	2,230.3	-1	범박동 226-1대	247.9	
			-2	범박동 226-2대	252.5	
			-3	범박동 226-3대	252.6	
			-4	범박동 226-4대	252.6	
			-5	범박동 226-5대	254.9	
			-6	범박동 226-9대	229.1	
			-7	범박동 226-8대	228.2	
			-8	범박동 226-7대	259.3	
			-9	범박동 226-6대	253.2	
	A-28	492.8	-1	범박동 228-1대	242.9	
			-2	범박동 228-2대	249.9	

2) 공동주택용지

г н	7) T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위 치	면적(m²)	비고
계	_	109,863.5		109,863.5	
_	A-1BL	56,976.5	괴안동 251-1대	56,976.5	국민임대
_	B-1BL	52,887.0	범박동 234-1대	52,887.0	

3) 준주거용지

F B	-1 7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_	11,514.0	_	-	11,514.0	
_	B1	1,349.6	-1	범박동 210-1대	1,349.6	
	B2	1,416.0	-1	범박동 211-1대	718.5	
			-2	범박동 211-2대	697.5	
	В3	3,889.2	-1	범박동 211-4대	898.2	
			-2	범박동 211-5대	997.9	
			-3	범박동 211-6대	991.5	
			-4	범박동 211-7대	1,001.6	
	B4	1,576.7	-1	범박동 212-1대	789.4	
			-2	범박동 212-2대	787.3	
	В5	1,575.0	-1	범박동 212-4대	793.6	
			-2	범박동 212-5대	781.4	
	В6	1,707.5	-1	범박동 211-9대	883.7	
			-2	범박동 211-10대	823.8	

4) 근린생활시설용지

гн	7] 7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계	_	8,175.0	_		8,175.0	
_	H1	894.7	-1	괴안동 247대	894.7	변경
	Н2	1,447.9	-1	괴안동 248-2대	734	
			-2	괴안동 248-1대	713.9	
	Н3	1,358.1	-1	괴안동 248-5대	731.5	
			-2	괴안동 248-4대	626.6	
	H4	3,419.9	-1	괴안동 254-2대	853.2	
			-2	괴안동 254-3대	855	
			-3	괴안동 254-4대	855.1	
			-4	괴안동 254-5대	856.6	
	Н5	1,054.4	-1	범박동 232-5대	521.6	
			-2	범박동 232-6대	532.8	

5) 주차장용지

도면	가구	면적(m²)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전역(III)	위 치	면적(m²)	미끄
계	_	5,648.9		5,648.9	
	C1	3,017.4	범박동 212-6 차	3,017.4	노외 주차장
_	C2	1,474.0	괴안동 254-1 차	1,474.0	노외 주차장
	СЗ	1,157.5	괴안동 246 차	1,157.5	노외 주차장

6)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면적(m²)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신기(1117	위 치	면적(m²)	1175
계	_	1,367.0	_	1,367.0	
_	E1	1,367.0	괴안동 264-1 대	1,367.0	

7) 학교용지

도면	가구	면적(m²)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L (m)	위 치	면적(m²)	1,4
계	_	13,565.0		13,565.0	
	F1	995.7	범박동 232-4 대	995.7	유치원
_	F2	12,569.3	범박동 232-3 학	12,569.3	중학교

8) 종교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m²)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건축(!!!)	위 치	면적(m²)	刊业
계	_	1,106.5		1,106.5	
_	G1	1,106.5	괴안동 265-3종	1,106.5	

9)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면적(m²)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U 7(m)	위 치	면적(m²)	7
계	_	1,640.2		1,640.2	
_	I1	1,640.2	범박동 200 대	1,640.2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 이	• 3층이하(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 지상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 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4층 이하)		
_	A1~A6	허용가구수	• 5가구 이하		
		형 태	지붕은 경사도 10:3 ~ 1경사지붕 면적은 최상층	0:5의 박공 또는 모임지붕형태 바닥면적의 80%이상	
		색 채	주조색은 벽면적(창호제외)의 80%이상 사용지붕색상은 벽면색과 동일계통 범위내에서 조화되는 색상으로 한다.		
		배치	• 인접 1개 필지에 한하여 •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건축지정선	_	
			벽면한계선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세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계율	• 50%이하		
		용건	덕률	· 100%이하		
	A7	높 이		• 3층 이하		
_	A10~A13	허용7	가구수	• 5가구 이하		
	A23~A28	·语o	태	 지붕은 경사도 10:3 ~ 10:5의 박공 또는 모임지붕형태 경사지붕 면적은 최상층 바닥면적의 80%이상 		
		색 채 배 치		 주조색은 벽면적(창호제외)의 80%이상 사용 지붕색상은 벽면색과 동일계통 범위내에서 조화되는 색상으로 한다. 		
				 인접 1개 필지에 한하여 합필가능 건축물의 주방향은 가급적 남향, 동향으로 배치 		
					i 급상, 중상으도 배시	
		건축	축선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u> </u>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연면적 2/5 범위 내에서 1층에 한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지상 2개층 이상 맞벽 건축시 200%이하)			
		높 이	• 4층 이하(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 지 상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5층 이하)			
		허용가구수	• 5가구 이하			
_	A8~A9	형 태	 지붕은 경사도 10:3 ~ 10:5의 박공 또는 모임지붕형태 경사지붕 면적은 최상층 바닥면적의 80%이상 			
	A14~A22	색 채	• 주조색은 벽면적(창호제외)의 80%이상 사용 • 지붕색상은 벽면색과 동일계통 범위내에서 조화되는 색상으로 한다.			
		배치	• 20m이상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맞벽건축 (A-8블럭 1,2,3필지와 A-14블럭 1,2,3필지 맞벽건축 권장)			
			건 축 • 1m : A8~A9, A14~A22블록, 전면도로와 이면도로 교차 부분 한계선 (A16~A18블록은 중(집)3-1호선 전면도로변에만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선	• 2m : A8~A9, A14~A15, A17~A22블록 전면도로변 - 건축물외벽은 전체 벽면길이의 1/2 이상 건축지정선에 접해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필로티구조 부분 2. 지정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경우 곡선상의 점을 연결하여 직선화한 부분 3. 지정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50cm이하로 이격된 부분			

2) 공동주택용지

도 면 표 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구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의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및 높 이	구분용적률층수A-1 BL165%이하-15층B-1 BL175%이하-15층					
_	_ A-1BL B-1BL	형 태	 변화감 있는 입면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을 향하는 측벽의 일부에 발코니 및 창호를 설치(B-1 블럭만적용) 배면에 대한 입면 특화 계획을 수립(가로변경관 제고) 판상형 주동은 주동 매스분절을 통해 입면변화를 유도 주동내의 층수 변화는 3개층 이내로 계획 주동 2~3층의 기단부 마감은 차별화된 재료 사용하고 기단부 최 상부에 몰딩을 설치하여 경관연출(B-1블럭만적용) 지붕과 옥탑의 형태는 박공형을 권장하되 지붕의 경사도는 10:4 이상으로 계획 주동의 측벽은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녹화계획을 수립 					
		색 채	_					
		배 치	 단지내부의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계획과 주동배치계획 수립 A-1BL: 남고북저의 지형에 순응하는 층고별 주동 배치계획 수립(북측도로변: 15층 내외, 남측구릉지변: 12층 내외) 랜드마크 형성을 위한 주동배치계획 수립(블럭의 가각부) 					
		건축선	전축한계선 •10m(A-1BL의 동남우회도로변, 아파트주동에 한함) •3m(주진입구와 면한 도로변)					
			건축지정선 -					

3) 준주거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택, 안마시술2 식물 관련 시·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건폐율	• 60% 이하			
	- B1~B6	용적률	• 420% 이하			
_		층수	• 7층 이하			
		형태		건축물 중·고층부에 지구중심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입면디자인 계획저층부에 공중정원, 피로티 등의 계획으로 개방감 및 변화감 유도		
		건축선	건축 지정선	3m(20m 도로변) 건축물외벽은 전체 벽면길이의 1/2 이상 건축지정선에 접해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통로기능의 필로티구조 부분 지정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경우 곡선상의 점을 연결하여 직선화한 부분		
			건축 한계선	• 3m(이면도로변)		

4) 근린생활시설용지

도 면 번 호	가구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H1~H5		용 도	 ●허용용도 ─H1~H4: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오피스텔,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H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_		H1~H5	용적률	• 300% 이하(단, H5의 경우 240% 이하)			
		층수	• 5층 이하(단, H5의 경우 4층 이하)				
		형태	• 건축물 중·고층부에 지구중심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입면디자인 계획 • 저층부에 공중정원, 피로티 등의 계획으로 개방감 및 변화감 유도				
		건축선	3m(폭원 20m이상 도로변) - 건축물외벽은 전체 벽면길이의 1/2 이상 건축지정선에 접해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필로티구조 부분 2. 지정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경우 곡선상의 점을 연결하여 직선화한 부분				
			건축한계선 • 2m(이면도로변)				

5) 주차장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한하여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상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용도 					
		건폐율	• 90%이하					
_	C1~C3	용적률	• 450%이하					
		노이 게 키	• 5층 이하					
			배 치 형 태	 변화감 있는 입면 및 매스형태 연출 (충별 규모계획수립, 스킵플로어 적용 등) 주차장 접지층의 다양한 포장패턴적용 (용도 및 기능별, 외부 진출입 도로 등에 따른 차별화) 주차건물의 옥상부는 지붕 바닥면적 25%이상 녹화 외벽부분이 개방형구조일 경우 내부차폐 및 소음 등의 방지를 위하여 친자연적 소재의 루버를 설치하며, 벽면녹화가 가능하도록 함 				
		색 채	_					
		건축선	건축 C1 • 3m (전면도로변) 한계선 C2 • 2m (이면도로변) C3 • 2m (전면도로변) 건축 • 3m (전면도로변) 지정선 - 건축물외벽은 전체 벽면길이의 1/2이상 건축 지정선에 접해야 함					

6) 사회복지시설용지

도 면 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_	E1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					
							층 수	• 5층 이하
			형 태	• 자연친화적인 저층 건축물 계획				
		배치	• 중로 1-3호선변에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7) 유치원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1	호	하용용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유치원 허용 및 그 부속용도 一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외의 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 대상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불허용도 一허용용도 외의 용도		
_		F1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40%		
					층 수
		형 태	 환경친화적 옥외공간계획(자연형 놀이터, 체험학습장, 야생화원, 잔디광장 등) 자연친화적 저층 건축물 계획 		
		색 채	_		
		배 치	• 어린이공원과 연계되도록 보행동선 및 시설배치		

8) 학교용지

도 면 번 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 250%
		층 수	• 5층 이하
	F2	형 태	• 소음을 차단하고 주변환경에 시각적 차폐를 위해 녹지 등의 차단공간 마련
_		색 채	-
		배치	 녹지축과 연계하여 학교시설 배치 간선도로에서 지구조망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시설배치 도서관, 강당, 체육관등은 지구내 지역주민이 활용가능토록 계획 건축물 배치 중학교: 계수대로변 소음 저감을 위하여 교사동은 도로에 직각으로 배치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9) 종교시설용지

도 면 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1	용 도	 허용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_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40%
		높 이	• 4층 이하(종탑은 30m 이내로 함)			
		형 태	• 자연친화적인 저층 건축물 계획			
		배치	• 중로 1-3호선변에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10) 업무시설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_	I1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					
							층 수	• 5층 이하
		형 태	• 자연친화적인 저층 건축물 계획					
		배치	 중로 1-3호선변에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근린공원과 연결부에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배치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경관계획

가) 경관현황

- 지구의 남동측 계수대로변은 수림이 양호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전원적인 자연경관을 형성 하고 있으나 계수대로의 건설에 따른 경관위해요소가 발생됨
- 지구북측 동남우회도로에서의 조망경관은 산지구릉이 길게 형성되어 산림축에 의한 경관축의 형성이 가능함
- 지구 북서측 현대홈타운 단지 주변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도시적 이미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계수재개발구역의 노후주택이 위치함

나) 경관계획의 목표

- 기존주거지와 조화되는 경관
 - -도시의 연속성과 녹지축 경관을 고려하여 지구 서측 현대홈타운 단지 및 남측의 계수재개발 구역과 조화되는 경관을 계획
- 친환경단지 경관
 - 간선도로 등 주 접근도로에서의 지구관통 통경축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주변구릉지의 자연환경을 경관요소로 도입
- 주요접근도로에서의 경관
 -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주동계획 및 높이 계획수립

다) 지구경관계획

- 지구내 경관통제점을 주요접근로인 계수대로, 동남우회도로, 지구내 도로상으로 설정하여 계획적인 경관 연출
- 주요 경관통제점에서의 경관목표물을 형성하여 특징 있는 경관아이덴티티를 부여
- 경관목표물은 자연환경, 주동, 가로시설물 등 각 요소별로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되고 다양한 경관이 되도록 계획

라) 부분별 경관계획

- ① 동남우회도로변 경관계획
 - 주변이 주거지역과 이어지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동남우회도로에서의 개방성 확보 및 변화감 있는 주동계획 연출
 - 공원 등 열린공간과 연계된 통경축 확보로 동서 구릉지의 경관요소 활용

② 계수대로변 경관계획

- 주요 경관 통제점에서의 특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여 지구의 경관 아이덴티티 부여
- 도시고속화 도로인 계수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피드스케일에 부합 되는 경관연출

③ 지구내 가로변 경관계획

- 주요 가로 및 보행로 변의 휴먼스케일에 맞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조정 과 건축물의 파사드, 색채 등 디테일 디자인 수립
- 보행 및 주행시 연속적 경관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녹지, 친수공간, 환경조형물 등 시각적 요소의 적절한 배치 유도
- 가로변 활성화를 위하여 광장 등 공간 및 각종 오브제 도입

④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 주거지역과 이어지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구릉지 녹지공간의 산세와 어울리는 계획 수립
- 남고북저 경사지의 특징을 활용한 층수계획 및 주도의 층수 조정을 통한 중첩되는 이미지를 연출
- 획지별 중층-저층-고층의 연속적 변화감 부여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계획

2) 친환경계획

가) 친화경계획의 목표

- 친인간, 친생물, 친자연을 통합하는 환경네트워크 구축으로 GB지구 개발의 인식변화 유도
- 환경요소의 적극적 보존을 통한 환경생태적 주거단지 조성
- 활용 가능한 자원요소의 적극적 도입으로 생태 복원의 역할 수행

나) 친화경계획의 방향

- 동남우회도로변 및 남측 구릉지에 위치한 녹지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 훼손지역은 식 생복원계획 수립
- 동측 구릉지의 지구경계는 기존 식생과 연계되도록 지형 및 식생을 보존
- 동남우회도로 및 계수대로에 의한 절토면은 기존 수림대와 유사 수종 식재
- 기존의 건천형의 자연수계는 자연형 계류체계 유지를 통한 수자원 보존
- 생태이동 통로 계획으로 지구내 도로에 의한 동식물상의 단절을 최소화

다) 친환경 조성계획

- ① 녹지 네트워크(Green-Network)
 - 지구의 남북 두 곳에 거점녹지 개념의 근린공원 조성(지구내 비오톱의 중심 : 생태공원화)

- 동측의 지구경계부의 구릉지를 남북 두 곳의 근린공원과의 연결녹지축으로 계획
- 단지내 녹지는 주변녹지와 연계하여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계획
- 계수대로변 녹지는 다층식재로 계획하여 생태적 녹지계획수립
-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녹지축은 생태통로 조성으로 동식물의 이동통로로 활용

② 수환경 네트워크(Blue-Network)

- 기존 자연수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지내 수환경 친수공간 계획
- 수량이 부족한 지구 특성을 고려하여 건천형 수공간으로 조성
- 지구내 저류지는 수량확보를 위한 담수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기시 녹지공간으로 활용
- 동측구릉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받을 수 있는 잔디수로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여 물순환체계를 형성
- 남측 공동주택 내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지구내 환경학습 기능 제고
- 보행가로 및 가로공원에는 벽천, 분수 등의 친수경관 형성

③ 친환경시설계획

- 절개부 사면은 산벽 등의 환경친화적인 옹벽으로 조성하고, 자연친화적 재료 및 덩굴성 식물 사용으로 생물 서식처 확보
- 단지내 사면/레벨차가 있는 곳은 첩석 및 소나무 화계 등을 이용한 사면보호계획 수립
- 기존 산책로, 녹지공간, 보행자통로 등의 연결을 통해 보행중심의 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의 이용 확대
- 공원 및 경관녹지 등에는 자연요소를 활용한 시설물과 공간 계획을 통해 다양한 경관을 연출 하고 지구내 랜드마크 요소로 활용

3) 에너지저감계획

① 자연에너지

• 지구내 어린이공원에 태양열 집광판 등을 사용한 가로등과 정원 등에 설치하여 청정테마공간 으로 조성

② 물의 순환

• 자연형 잔디수로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으로 우수의 토양침투를 증대시켜 지구내 물순환이 원활 이 되도록 계획

- ③ 건물녹화
 - 열차단을 위한 옥상부 녹화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계획
 - 건축물의 측면녹화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2~3개 층 규모로 계획
- ④ 바람의 활용
 - 동서 가로방향 녹지축의 바람길이 유지되도록 건축물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피로티 계획으로 바람통로를 확보하여 하절기 에너지 저감을 유도
- ⑤ 시설의 포장
 - 주차장, 광장 등의 넓은 포장면의 포장은 지열의 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바닥 포장재를 사용
 - 재활용 고무블럭, 침목 등의 재활용 재료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촉진 유도

4) 교통처리계획

가) 가로망계획

- ① 간선도로
 - 사업지구 북측의 대2-9호선 도로를 주요 접근로로 지구내 주요 교통축 구성
 - 주간선도로는 15~28m로 계획
- ② 집산도로
 - 주거단지내의 교통량을 통합하여 지구내 간선도로로의 접근 및 주거단지를 연결
 - 집산도로는 12~15m로 계획
- ③ 국지도로
 - 가구 구획 및 각 획지의 접근을 위한 8~12m 도로계획
- ④ 보행자전용도로
 - 학교, 준주거용지 및 단독주택지지역내 보행안전과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폭 4~6m로 계획
- 나)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 단지내 주동선은 단지 입구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하여 설치하며 내부동선은 향후 주 택건설사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 다) 차량 진출입계획
 -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허용・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5) 옥외광고물 계획

○ 단독주택지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 간판의 총수량 : 업소당 2개 이내 • 옥상간판, 벽면 및 건물기둥이용 세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표시 금지		
	 1개수 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 		
	위치 • 2층 창문 하단선 이하에 설치		
가로형간판	•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폭의 80%이하, 높이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크기 간 벽면폭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 • 1개 업소의 간판 최대길이는 10m		
	배치 •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수직연결은 불가 • 같은 층의 간판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개수 • 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표시		
행거형간판	위치 • 1층 공지부분 상부건축물 돌출부하부(행거형) 또는 가로형 간판괴 같은 높이의 벽면 양단에 설치가능		
	크기 • 가로폭은 1m이내		
	배치 • 보행을 위한 유효높이 2.5m이상을 확보		

○ 준주거용지

구 분	내 용	刊	고
기본방향	• 간판의 총수량 : 업소당 2개 이내 • 옥상간판, 벽면 및 건물기둥이용 세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표시 금지		
	개수 • 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		
	위치 • 2층 이하 점포에 설치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		
	•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폭의 80%이하, 높이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크기 벽면폭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 • 1개 업소의 간판 최대길이는 10m		
가로형간판	 같은 층의 간판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수직연결은 불가 주출입구 상단에는 가로형 광고물 설치금지(건물명 제외) 백치 측후면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당 1개소만 설치 가능 가로길이는 최대 5m, 세로길이는 3m 이내로 함이 경우 각 업소의 간판은 동일 크기로 분할 설치 (전체 간판 수량에 포함됨) 		
돌출형간판	 간판의 하단이 3층이상(2층 창문 상단선)의 벽면에 표시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문 상단선 위로 표시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 측(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표시 불가능(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후면은 제외) 돌출간판은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간판의 높이는 도로면에서 4m 이상의 위치에서 최대 20m 까지 허용하되, 1개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 이내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은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 업소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m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이내 		
연립지주형 간판	 3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이내, 가로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 건축선 또는 건축지정선으로부터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 		

○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내 용	刊	고
기본방향	• 간판의 총수량 : 업소당 2개 이내 • 옥상간판, 벽면 및 건물기둥이용 세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표시 금지		
	개수 • 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이내		
	위치 • 2층 이하 점포에 설치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		
	•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폭의 80%이하, 높이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크기 벽면폭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 • 1개 업소의 간판 최대길이는 10m		
가로형간판	 같은 층의 간판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수직연결은 불가 주출입구 상단에는 가로형 광고물 설치금지(건물명 제외) 측후면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당 1개소만 설치 가능 가로길이는 최대 5m, 세로길이는 3m 이내로 함이 경우 각 업소의 간판은 동일 크기로 분할 설치 (전체 간판 수량에 포함됨) 		
돌출형간판	 간판의 하단이 3층이상(2층 창문 상단선)의 벽면에 표시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문 상단선 위로 표시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 측(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표시 불가능(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후면은 제외) 돌출간판은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간판의 높이는 도로면에서 4m 이상의 위치에서 최대 20m 까지 허용하되, 1개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 이내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은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 업소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m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이내 		
연립지주형 간판	 3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이내, 가로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 건축선 또는 건축지정선으로부터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 		

○ 주차장

구 분	내 용	刊	고
기본방향	• 간판의 총수량 : 업소당 2개 이내 • 옥상간판, 벽면 및 건물기둥이용 세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표시 금지		
	• 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개수 2개 이내		
	위치 • 2층 이하에 설치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		
가로형간판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폭의 80%이하, 높이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크기 간 벽면폭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 1개 업소의 간판 최대길이는 기둥스팬(Span)을 넘을 수 없다		
돌출형간판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3층이상에 설치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표시 불가능(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후면은 제외) 돌출간판은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간판의 높이는 도로면에서 4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되,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이내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A8~A9, A14~A15, A17~A22	단독주택 용지	• 간선가로(20m도로) 및 교차부 차량출입 불 허 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A-1BL, B-1BL	A-1BL, B-1BL 공동주택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용지 내에서 차량출입 불허		
_	B1~B3, B6	준주거 용지	• 간선가로(20m도로) 및 교차부 차량출입 불 허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H1~H5	근린생활 시설용지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E1, F1, G1, I1	공공시설 용지	차량진출입간선가로 및 교차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나) 대지내 공지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단, 공동주택 용지는 아파트 주동에 한하여 건축선 적용)
- 준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지의 전면공지에는 가로형 공개공지(도로변)와 쌈지마당형 공개 공지(도로가각부)를 설치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보도가 없는 도로와 공지부분의 단차이는 10cm이하가 되도록 계획

다) 주차장에 관한 계획

-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부천시 주차창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Ⅲ.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붙임2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